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1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6年 7月 10日(水) 11時21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第4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 第4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4. 平昌郡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중改正條例案
5.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第4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_____ 3 面
3. 第4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_____ 3 面
4.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3 面
5. 平昌郡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3 面
6.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5 面

(11時21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 제2대 의회 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로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하여 오늘과 같은 자치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것은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2대 의회 2년차를 맞이하는 오늘 회의도 계획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1時22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매회기에 처리하는 안건은 집회공고일전에 접수된 것에 한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중 기구개편조례안의 1건은 지난 7월 8일 접수되어 시간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없어 이번 회기 처리가 어려웠습니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선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사전 제출하여 최소한 집회 전일까지 의원에게 배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4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

(11時25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7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參 照 >

- 議事日程

(끝에 실음)

3. 第4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26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수현 의원과 김두경 의원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증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5. 平昌郡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關한條例증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1時27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關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입니다.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시대의 변화된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의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정원을 보강하고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형 재난사고에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구 및 가스담당부서의 기능강화와 상수도 수질관리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설부서인 지역개발과에 미탄면 지방건축8급 1인, 봉평면 지방행정9급 1인, 진부면 지방농업9급 1인을 각각 감하여 직급 및 직렬 조정후 보강하며 둘째,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7급 즉, 지방행정 또는 토목 1인을 순증하고 평창읍 기능10등급 1인을 감하여 7급 즉, 지방행정 또

는 지방건축 1인을 증원하며 셋째, 상공과 상공가스계에 가스안전관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7급 즉, 지방기계 또는 지방화공 1인을 순증하고 넷째, 도시과 수도계 수질관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지방보건9급 1인을 감하여 도시과 지방보건9급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명칭이 지도원으로 개칭되고 근무상환 연령도 58세로 늘어 났으나 우리군에는 한시정원인 방범원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기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4조 2항의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능 및 근무상환 연령표중 1 종

방법원란과 근무상한 연령이 53세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경노무인 사환의 연령을 58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하려는것 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

-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 平昌郡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중改正條例案
(以上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

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동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1時3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입니다.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시대의 변화된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부서의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 중복이나 유사직제를 통폐합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분야와 날로 증가하는 관광문화체육분야의 기능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능을 조정하고 둘째, 적극적인 주민봉사를 위해 민원봉사실을 신설하며 셋째,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개발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로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넷째, 날로

늘어나는 관광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관광과 관련있는 체육시설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광문화과를 신설하며 다섯째, 기능이 쇠퇴하거나 조정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업무가 유사한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와 통폐합하여 복지과로 조정하였으며 여섯째,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농정과, 상공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에 타 조례도 함께 개정토록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參 照 >

-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확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회기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閉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鎭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郡 守	金 容 郁
副 郡 守	朴 容 康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 劃 室 長	申 大 松
內 務 課 長	李 永 德
社會振興課長	宋 在 明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社 會 課 長	金 榮 柱
家庭福祉課長	朴 靜 子
產 業 課 長	金 時 漢
地域經濟課長	姜 慶 錫
都 市 課 長	權 純 喆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 昌 吉

社會指導課長 尹 澈 竣

技術普及課長 李 宇 炯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李 京 植

專門委員 辛 敦 善

議事係長 咸 京 鎬

地方行政主事補 邊 相 得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 (14面に 실음)

.....
【 報 告 事 項 】

○ 제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 의안 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지방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96. 6. 1)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199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 '96. 7. 8)

○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7건 조례안

('96. 6. 12 - 평창군으로 이송)

· '9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 (이상 4건 '96. 6. 12 - 평창군으로 이송)

· 평창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96. 6. 12 - 평창군으로 심의보류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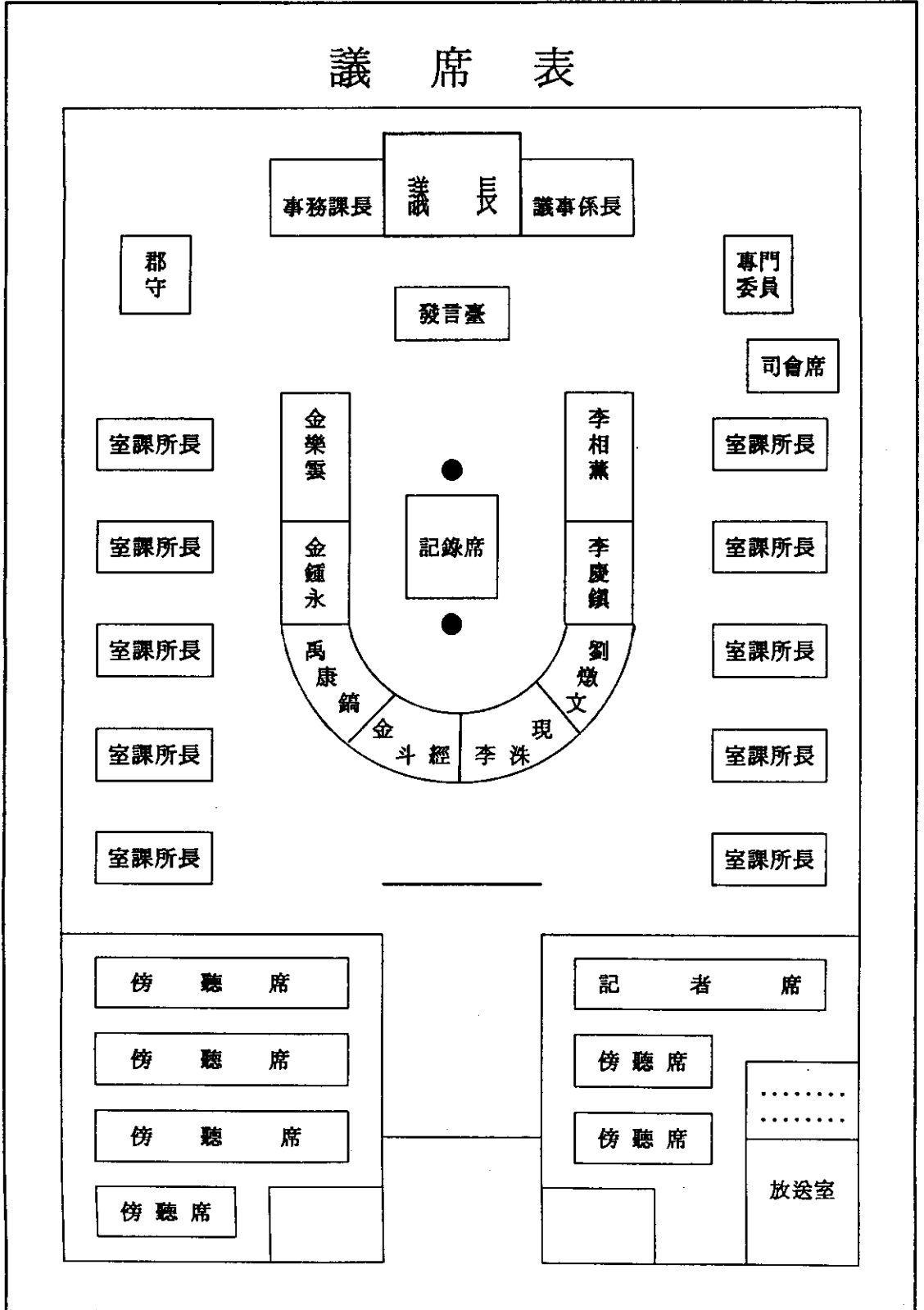
· 정부의소규모교육청통·폐합철회촉구의건의문

('96. 6. 13 - 교육부의 5개기관으로 송부)

○ 일반문서 및 민원처리사항

- 소수력발전소건설반대에관한진정
서
('96. 6. 17 - 평창읍 다수리 소
수력건설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우영철)
- 영동고속도로4차선확·포장공사와
관련한진정
('96. 6. 18 - 진부면 상진부1리
리장 박현철의 주민일동)
- 마평2리세월교가설공사비에산액조
정에관한진정
('96. 6. 12 - 진부면 마평2리
안보현의 주민일동)
- 이상 3건 접수 관계기관에 이송
진정인에게 처리 내용 회신
- 마평2리세월교가설공사와관련한서
면질문서 접수
('96. 6. 25 - 우강호 의원 접수
평창군 으로 이송)

議 席 表



의 사 일 정

제41회평창군의회(임시회)

'96. 7. 10(1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7.10(수) 11:00	-	○ 개회식	
11:20	제 1 차 본 회 의	1. 제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특서명의원 선출의건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6. 1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1996. 7. 10
- 다. 상정일자 : 1996. 7. 10 제41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이유

방법원에 대한 명칭이 지도원으로 개칭되고 근무상한 연령도 58세로 늘어 났으나 우리 군에는 한시적 정원인 방법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기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제4조의 2의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 조항 삭제
- 나.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 중 1종 방법원란과 근무상한 연령이 53세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

4. 검토의견

- 가.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방법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근무상한 연령도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이 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방법원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히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임.

-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